2025

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

화재조사관계법규1

엠북 소방



- ↑ 고난도 문제 대비, 고득점용
- ↑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
- ↑ 최근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
- ★ 80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화재조사관계법규1 ISBN : 979-11-94286-84-4

발간일 : 2025-03-04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 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콜리지 · ద독 홈페이지 : https://www.mbook.kr/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2,500원



화재조사관계법규1

[목차]

제1편 소방기본법(p5)

제2편 화재조사법(p78)

제3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(p108)

제4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(p147~163)

[약어]

- <u>청장</u>은 소방<mark>청</mark>장
- <u>본부장</u>은 소방<mark>본</mark>부장
- <u>서장</u>은 소방<mark>서</mark>장
- 소방관서는 소방청, 소방본부, 소방서
- <u>관서장</u>은 소방<u>관서장(</u>소방<mark>청</mark>장, 소방<mark>본</mark>부장,

- <u>시도</u>는 특별<u>시</u>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<u>도</u>, 특별자치도 - <u>시도지사</u>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<u>시</u>장, <u>도지사</u>, 특별자치도지사 - 상황실은 119종합상황실 - 대원은 소방대원 - 소방차는 소방자동차 - 안전원은 한국소방안전원 - 원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 - 대상물은 소방대상물 또는 대상물 - 위급상황은 화재, 재난/재해, 그 밖의 위급한 <u>상황</u> - 사유없<u>이</u>는 정당한 <u>사유 없이</u>

소방<mark>서</mark>장)

- PTFE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

[비고] 소방기본법, 화재조사법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방법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붉은색은 시행예정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 내용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소방기본법

[**목차**]

제1장 총칙

제2장 소방장비 등

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

제4장 소방활동 등 제5장 화재의 조사

제6장 구조 및 구급

제7장 의용소방대

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 등

제8장 한국소방안전원

제9장 보칙

제10장 벌칙

제1장 총칙

1~7조

1. 목적

- 화재 예방/경계/진압
- 위급상황 구조/구급
- 국민 보호

2. 정의

물건

지역

가) 소방대상물은 건축물, 차량, 항구에 매어둔

- 공공 안녕/질서 유지, 복리증진

선박, 선박 건조 구조물, 산림, 인공 구조물,

나) 관계지역은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이웃

- 화재 예방, 경계, 진압, 구조, 구급 필요 다) <u>관계인</u>은 대상물 <mark>소</mark>유자/<mark>관</mark>리자/<mark>점</mark>유자

라) 소방본부장(이하 본부장)은 시도 화재

부서 장 마) <u>소방대</u>는 화재 진압, 위급상황 구조/구급 - 소방공무원, 의<mark>무</mark>소방원, 의<mark>용</mark>소방대원

바) 소방대장(이하 대장)은 소방본부장(이하

본부장), 소방서장(이하 서장) 등 위급

예방, 경계, 진압, 조사, 구조, 구급 업무 담당

3. 국가/지자체의 책무

현장에서 소방대 지휘

- 위급상황에서 국민보호 시책 수립/시행

4. 소방기관의 설치 등

가) 시도 소방기관

- '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'

나) 본부장/서장은 소재지 시도지사가

지휘/감독 - 청장은 필요시 지휘/감독 가능

다) 시도 소방업무 위해 시도지사 직속

소방본부 둠

- 소방업무는

· 화재 예방/경계/진압/조사

· 위급상황 구조/구급

· 소방안전교육/홍보

· 위급상왕 구소/구급

5. 소방공무원 배치

지방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'지자체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'에 따라 소방공무원 둘 수 있다

- 제주도 포함, 시도 소방기관과 소방본부에

가. 설치

1) 관서장은 설치/운영 의무

6. 119종합상황실(이하 상황실)

- a) 구조/구급 필요 위급상황시,
-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,
- 전독인 오징필공들 뒤에, - 정보 수집/분석, 판단/전파, 상황관리, 현장

- 성모 수십/문식, 판단/선파, 상왕관리, 지휘, 조정/통제 d) 24시간 운영 2) **소방본부**(이하 **본부**) 상황실에는 경찰 둘 수 있다 나. 실장 1) 상황실 근무자 중 최고직위 - 최고직위가 2인이상이면 선임자 2) 업무 - 재난 신고접수 - 인력/장비요청 등 사고수습

b) 소방청, 시도 본부, 소방서에 각각

c) 전산/통신요원 배치, 유무선통신시설 구비

설치/운영

- 출동지령, 지원요청
- 재난상황 전파/보고
- 현장지휘, 피해파악
- 수습 정보수집/제공

다. 상황 보고

- 소방<mark>서</mark>는 <mark>본</mark>부, 본부는 소방<mark>청</mark> 상황실에
- 1) 다음 화재
- 사망 <u>5</u>, 사상 <u>10</u>, 이재민 <u>100인</u> 이상

지체없이 서면, 팩스, 컴퓨터통신 등 보고

- 재산피해 <u>50억</u> 이상
- 관공서, 학교, 정부미도정공장, 문화재, 지하철, 지하구

- 관광호텔, <u>11층</u> 이상, 지하상가, 시장, 백화점, 15,000 제곱미터 이상 공장, 화재예방강화지구 -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제조, 저장, 취급소 - <u>5층</u> 이상 또는 객실(병상) <u>30실(30개)</u> 이상 숙박시설, 병원, 요양소 - 철도차량, 항구에 매어둔 1천톤 이상 선박, 항공기, 발전소, 변전소, 가스/화약 폭발
- 다중이용업소 2) 통제단장의 현장지휘 필요
- 3) 언론 보도 4) 청장이 정하는 상황

7. 소방정보통신망

위해 구축/운영 가능 - 회선 이중화 가능

- 청장/시도지사는 상황실 등 효율적 운영을

·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 요

8. 소방기술민원센터

가) 청장/본부장이 각각 설치/운영 - 센터장 포함 18명내

- 나) (기술민원) 업무
- 민원 종합 접수/처리
- · 소방시설, 소방공사,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해석 등

- 정보시스템 운영/관리
- 현장확인
- 청장/본부장 지시 업무 다) 청장/본부장은 관계기관장에 공무원/직원
- 파견 요청
- 설치시 시도 규칙으로 정함
- 9. 소방<mark>박</mark>물관
- <mark>청</mark>장이 행안<u>부령</u>으로 설립/운영할 수 있고, 필요사항 정함
- 필요사항 정함
- 관장/부관장 각 1인
- · 관장은 소방공무원중 청장이 임명
- 국내외 역사, 복장/장비 등 수집/전시

라) 이외는 소방청에 설치시 청장, 본부에